

E-22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의 배경과 내용

1987.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목 차

1. 부채경감 대책의 성격과 주요내용	1
가. 부채경감 대책의 성격	1
나. 부채경감 대책의 주요내용	2
2. 대책의 배경	5
가. 농어가 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5
나. 부채경감 대책의 필요성	12
다. 부채경감 대책과 국민경제	14
3. 대책의 세부내용과 효과	18
가.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	18
나. 소득증대 및 부채 억제 대책	30
4. 경감대책의 시행지침	40
가. 사채대체자금의 지원	40
나. 영세농어가 중장기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지원	46
다. 농지구입 자금지원	49
〈 부록 1 〉 새마을영농회 심사위원회 설치 요령	52
〈 부록 2 〉 사채대체자금 지원신청 서식	53

빈 면

1. 부채경감대책의 성격과 주요내용

가. 부채경감대책의 성격

정부는 농어가 부채의 경감을 위해 1조원의 공금융을 특별지원하여 고리의 농어촌 사채를 농·수·축협 자금으로 대체하는 한편 농수산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모두 2조원 규모의 대 농어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을 3월 16 일자로 발표하였다. 이번의 정부조치는 농어가들의 당면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당장 덜어 주고 장기적으로는 부채증가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이라는 기본전략하에서도 농수산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오늘날의 우리 농어촌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던 과거 60 년대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우리 농어촌의 발전은 80 년대에도 계속되어 1980 ~ 85 년동안에 농어가의 평균소득은 연 평균 16.3 % 씩 (경상가격 기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업이 자급을 위주로 하던 전통적인 농어업에서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농어업으로 바뀌면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었고 이는 농어가부채의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에 과다한 지출을 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해 3월 5일 법정부적으로 「농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영농·영양자금의 금리인하와 같은 농어촌의 부담경감과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시책은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도농간의 격차가 해소되는데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발표했던 「농어촌 종합대책」의 보완조치로서 현재 우리 농어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 추진하게 되었다.

나. 부채경감대책의 주요내용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농어가들이 현재 안고있는 부채의 심

각성과 그 발생요인을 다함께 고려하였다.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과 「농어가 소득증대 및 부채 억제대책」의 두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의 주요내용

I.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

1. 사채 대체자금의 지원 : 1 조원의 공급을 특별
공급
2. 영세농어가의 증장기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
3,740 억원
3. 농수산관련자금의 금리인하 : 현행 연 10 ~ 11 %를
8 %로 인하
4. '83 ~ '84 소 입식자금 이자 면제
5. 연체금리인하 : 연체금리를 현행 금리에서 2 % 인하
6.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 2,000 억원
7. 교육비 경감을 위한 기숙사시설 확충

II.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부채억제 대책

1. 농어촌 소득원의 지속적 확대 개발
2. 농어가 부채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이번 대책이 담고있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우선 금융 및 재정부문의 지원을 통하여 고리사채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어려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생산적인 중장기자금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병행하여 교육홍보를 통해 농어가의 합리적인 자금운용을 유도함으로써 무절제한 소비 지출의 증대로 인한 부채증가요인을 제거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보다 근본 대책으로서 농어업소득의 안정적 증대와 농촌공업화의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장기적인 소득원 확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과거의 정책보다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조치라 하겠다. 특히 이번 정책은 정부의 국가경제 운용기조인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조세 및 금융질서를 지나치게 왜곡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하겠다.

2. 대책의 배경

가. 농어가 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어가 부채의 현황

농가부채는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호당 평균부채가 1980년보다 6배가 증가한 202만4천원에 이르렀다. 비록 그 증가속도는 198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부채규모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농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농가부채의 구성을 보면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제도금융이 꾸준히 확대된 결과 사채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

〈표 1〉 농가부채의 규모와 증가율

	1980	1983	1984	1985
호당농가부채(천원)	339	1,285	1,784	2,024
(전년대비증가율:%)	(96.0)	(54.9)	(38.8)	(13.4)

고 있다. 그러나 사채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 실정이며 사채 총액도 크게 증가하여 1985년에는 1조 1,200억원에 달하였고, 연간 사채이자만도 2,960억원이 넘고 있다.

농어가부채의 용도는 생산성부채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비성부채와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농가부채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채를 지고있는 농가

〈표 2〉 농가부채의 구성 및 사채규모

	1980	1983	1985
호당사채액(천원)	166	421	583
사채의 비중(%)	(49.0)	(32.8)	(28.9)
사채총액(억원)	3,577	8,420	11,229

〈표 3〉 농가부채의 용도

단위 : 천원

	1980	1983	1985
생 산 성 부 채	206 (60.8)	801 (62.3)	1,306 (64.5)
소 비 성 부 채	112 (33.0)	361 (28.1)	476 (23.5)
부 채 상 환 용 부 채	21 (6.2)	123 (9.6)	242 (12.0)
계	339 (100.0)	1,285 (100.0)	2,024 (100.0)

※ ()은 백분율(%)

〈표 4〉 농가부채의 규모별 분포(1985년)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이상
구성비(%)	49.4	16.8	11.5	22.3

중 100만원 미만의 농가가 49.4%를 차지함으로써 농가의 부채규모는 그다지 높지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0만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농가가 22.3%나 된다는 사실은 결코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라 하겠다.

(2) 부채 증가요인

이와 같이 농어가부채가 증가한 요인은 첫째 1980년대에 들어서 농어가의 소득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의 증가추세가 둔화된 원인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증가율이 낮았고 또한 소를 비롯한 축산물과 일부 특용작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농어가 부채가 증가한 두번째 요인으로 농어가의 가계비지출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생활수준이 향상

〈표 5〉 농가소득 및 도시가계 소득증가율

(단위 : %)

	'75~'81	1982	1983	1984	1985
농촌소득증가율	27.1	21.1	14.8	8.2	3.4
도시가계소득증가율	39.9	13.4	15.3	11.3	8.9

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의 지출이 도시가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교제비와 관혼상제로 인한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또한 과소비풍조의 영향으로 가전제품의 구입 등이 늘어났으며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같이 소득증대와 직결되지 않는 부채와 지출이 증가하였다.

부채증가의 세번째 요인은 농가의 투자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던 종래의 자급적 영농에서 시장판매 위주의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의 투자가 확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부족해진 농어촌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농기계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못한 투자가 증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질금리의 상승에 의한 농어가의 수지악화를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물가상승률이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날 만큼 높았기 때문에 농수산자금의 대부분은 실질금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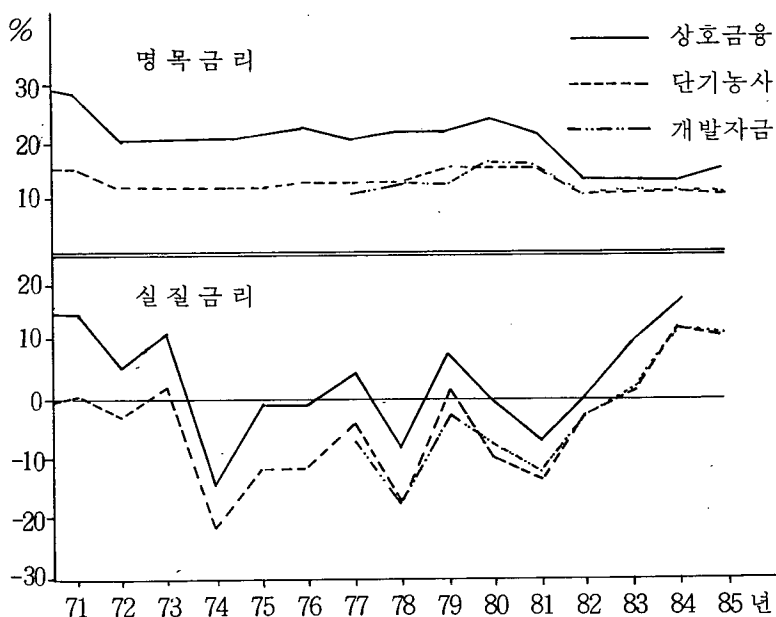
〈표 6〉 농가의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1980	1985
교 육 비	200	555
의 료 비	96	246
교제 및 관혼상제비	488	1,368
도시가계에 대한 교육·의료비 비율(%)	93.4	121.9

마이너스였다. 따라서 자금을 빌리는 자체만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농수산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자금의 실질금리가 크게 상승하여 이 자금을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할 경우 실질금리조차 보상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어가의 경제수지는 더욱 악화되었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주요농업자금의 금리변동



※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률

(3) 농어가부채가 문제시되는 이유

1985년 9월 현재 부채가 없는 농가는 13.9%이고 장기적으로 볼때 부채가 감소하는 농가는 33.7%로서 부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농가는 전체농가의 47.6%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농가는 52.4%나 되어 절반 이상의 농가는 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채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상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은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과, 현금 및 예저금과 같은 유동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 그리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또 얻게 되는 부채의 비율 등의 지표에 의해 나타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소득」 비율은 1980년의 12.6%에서 1985년에는 35.3%로 악화되었고 「부채/유동자산」의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54.1%에서 114.9%로 두배 이상 악화되었다. 또한 부채상환용 부채의 비중도 1980년의 6.2%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5년에는 12.0%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결국,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은 1980년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 농가의 부채상환능력 관련지표

단위 : %

	1980	1983	1984	1985
농가부채/농가소득	12.6	25.1	32.1	35.3
농가부채/유동자산	54.1	114.0	100.3	114.9
부채상환용 부채	6.2	9.6	10.6	12.0

한편, 우리나라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먼저 장기적인 상환능력이라 할 수 있는 「부채／총자산」 비율은 우리나라의 농가가 더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 년과 1985 년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5%에서 7.1 %로 크게 악화된 반면 일본은 8.0 %에서 7.4%로 오히려 개선되었다.

「부채／소득」 비율은 1980 년에는 우리나라가 12.6 %이고 일본이 37.3 %로서 일본이 훨씬 더 높았으나 1985 년에는 우리나라가 35.3 %, 일본이 32.1 %로서 오히려 일본보다 높아졌다. 유통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알 수 있는 단기지급 능력은 1980 년의 경우 54.1 %로서 일본에 비해 3 배 정도 높았으나 1985 년에는 114.9 %로서 7 배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질 만큼 악화되었다.

〈표 8〉 한·일간 농가부채 상환능력비교

단위 : %

관 련 지 표		1980	1985
부 채 총 자 산	한 국	2.5	7.1
	일 본	8.0	7.4*
부 채 소 득	한 국	13.1	35.3
	일 본	37.3	32.1*
부 채 유통자산	한 국	54.1	114.9
	일 본	18.0	16.1*

* 일본의 경우는 1984 년 수치임.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아직은 부채에 대한 장기지급능력이 우위에 있지만 단기적인 부채상환 능력은 크게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나. 부채경감대책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화되어온 농어가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당국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해 둘 경우 농어가의 부채상환능력이 점차 악화되어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다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중요한 것은 농어가부채가 늘어나는 근원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을 비롯한 농업생산 기반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단시일내에 증대시키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 농어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외소득 증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통한 공업화가 이루어질 때 보다 쉽게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마련이며

농어가의 부채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긴급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도 속효성있는 대책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농어가 부채문제와 관련된 당면문제 중 첫번째로 꼽을수 있는 것은 높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 사채의 부담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의 사채를 농협 등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저리의 제도금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영농규모가 작아 부채상환에 곤란을 겪는 영세소농어가의 부담문제이다. 일년 내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부채를 상환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생계비 지출조차 충당하기 힘든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세번째로, 정부가 권장한 각종 정책사업에 호응하였으나 생산과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히 부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선의의 농가들에 대해서 정부는 그 부담을 덜어 주고자 노력했다. 즉 1983 ~ 84 년의 소입식사업에 적극 호응하였으나 소값 하락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러모로 노력했던 것이다.

그밖에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어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생산적 증장기자금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었

으며 또한 교육비나 의료비와 같이 발전적이고 불가피한 가계비의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실시된다고 해서 농어의 부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요청되었다. 즉 대출된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용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와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용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희사채자금의 저축화를 유도함으로써 사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다. 부채경감대책과 국민경제

농업은 국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산업이다. 1970 년대와 같이 식량이 국가간의 무기로 사용될 경우 농업생산이 부족한 나라는 안보적 측면에서 큰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아직도 전체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민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국력이 신장되려면 농어촌지역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농업만이 중요한 산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부존자원은 물론 자본까지 부족한데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서 모든 국민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원료와 자본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 수출하는 대외의존적 경제구조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원료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고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쓸 돈을 안 쓰며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되었으며 이제 경제력도 커져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농어민의 혜택을 최대로 하면서도 가급적 전체 국민경제의 운용에 주름살이 덜 가도록 하는 일이었다.

이번 조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먼저, 물가상승의 압력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기적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하여 1970년대의 두자리 숫자의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고 안정 속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커다란 고통을 감수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절제하고, 기업주는 제품가격 인상을 보류하였으며, 정부도 각종 공공요금의 상승요인을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 등으로 흡수하며 오로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원유 등 수입원자재가격과 달러화 가치의 하락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국내의 통화증발요인이 극도로 커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민의 부담경감만을 위해 무한정한 돈을 쏟아면 그동안 피땀흘려 이룩한 안정기조는 무너지고 또다시 1970 년대와 같은 물가상승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통화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반 조치들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온 모든 국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에서 직면하게 된 또 하나의 어려움은 조세와 금리체제상의 질서를 왜곡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다. 현재의 조세부담이나 금리만을 보아도 농어민들이 부담하는 몫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도시근로자들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이번 조치로 인하여 농수산부문의 금리가 다른 부문의 금리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물론 농어민의 입장에서선 조금이라도 더 경감되기를 원하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심하게 왜곡된 조세 및 금리체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자신 및 가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때 불평·불만이 생겨 사회가 불안해지며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고 사기가 떨어져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발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지원 및 즉효성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합한 수준에서 유지함과 동시에 스스로 노력하는 농어민이 보다 잘살 수 있도록 농어촌 종합대책과 농어촌 공업화 등 소득증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끝으로, 이번 조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형평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 역시 열심히 일하면서도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계층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조치로 농어민 특히 영세소농계층은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 도시근로자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만 느끼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약조건과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많은 곤란이 있었다.

농어민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마련된 이번 조치의 근본적인 의의를 이해하시고 향후의 집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시어 이번 대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대책의 세부내용과 효과

가.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1) 경감대책의 의의와 기대효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농어가부채의 경감대책은 그동안 누적된 부채부담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던 농어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던 농어촌종합대책이란 장기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이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의 기본원칙〉

- 고리사채의 이자부담 경감
- 성실한 영세소농어가에 대한 지원 확대
- 생산적 중장기자금의 부담 경감
- 조세나 금리체계의 지나친 왜곡조치 지양

다시 말해서 농어촌종합대책과 같은 중장기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당면한 농어가부채의 부담은 자칫하면 이러한 정책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그 효과를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그리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긴급대책이란 점에 특색이 있다.

이번 부채경감 대책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직도 농어가부채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고리사채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소농어가를 집중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소값 파동과 같은 정부시책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생긴 부채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적 중장기자금의 금리인하를 통하여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소득을 얻도록 하였다. 또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자생적 발전능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세나 금리체계의 지나친 왜곡은 전체적인 국민경제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경제발전에도 결코 이롭다기만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어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이며, 이번 조치가 농어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셔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농어민 여러분께 돌아갈 직접적인 효과는 1987~89년의 3년간만 하더라도 약 7,561억원 정도가 되어 연평균 2,520억원의 경감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영세농어가일수록 혜택이 커서 0.5 ha 미만의 농가 또는 그에 준하는 어가는 연 평균으로 호당 17 만원을, 0.5 ~ 1.0 ha 는 14 만원, 1.0 ha 이상은 13 만원의 경감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기 대 효 과〉

○ 직접효과

— 총부채 경감효과('87 ~ 89) : 7,561 억(연 평균 2,520 억)

— 경영규모별 호당 경감효과(연 평균)

<u>0.5 ha 미만</u>	<u>0.5~1.0 ha</u>	<u>1.0 ha 이상</u>
169 천원	142	133

○ 간접효과

- 사채대체로 농어촌 저축증대
- 농어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능력 배양
- 농어가 경제의 안정화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한편 이번 조치로 대체된 사채자금은 농수축협에 저축형태로 바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올라가 여러분의 배당액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대책별 기대효과 (추정)

	'87	'88	'89
○ 사채대체자금	1,295 ^{억원}	1,295	1,295
○ 영세농어가 상환연기	262	262	262
○ 농수산자금 금리 인하	235	235	235
○ '83 ~ '84 소 입식자금 금리 대지급	155	151	244
○ 농지구입자금 지원	190	380	570
○ 연체금리 인하 및 기숙사 확충	101	165	229
합 계	2,238	2,488	2,835

라 여러분의 필요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능력을 더욱 높이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농수산자금의 금리인하는 수
지맞는 영농·영어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말할 나위 없을 것
이며, 이로 인하여 농어촌경제가 활성화되면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의 기타 사회문제도 점차 개선되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사채 대체자금의 지원

이 조치는 농어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리의 사채를 싼
이자의 제도금융자금으로 바꾸어줌으로써 농어가의 부채부
담을 덜어주자는데 그 뜻이 있다. 지원규모는 1조원이나 되

며, 현재 농어가가 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채를 바꾸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1. 지원규모 : 총 1조원
 - 저리중기자금 : 5,000 억원
 - 상호금융자금 : 5,000 "
2. 지원조건
 - 저리 중기자금 : 연리 8%(2년거치 3년상환)
 - 상호금융자금 : 연리 14.5%
3. 지원대상
 - 저리 중기자금 : 경지소유 규모 1ha 이하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어가(단 지원한도는 호당 100 만원)
 - 상호금융자금 : 1ha 이상의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어가, 저리자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영세농어가의 사채
4. 대상자 선정 : 「마을영농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
 - 최근 3년 이내에 재해를 입었거나 영농·영어에 실패한 농어가
 - 연이은 가족의 질병 또는 홍사 등으로 사채를 진 농어가

○ 취락구조개선사업 등 마을공동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사채를 지게된 농어가 우선

5. 경감효과 : 연 1,295 억원

이 사채대체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1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소농 또는 그에 준하는 어가에 대해 호당 100 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저리자금과 그 이외의 농어가 또는 100 만원 이상의 사채를 지고 있는 영세소농어가의 100 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는 상호금융자금이 그것이다.

저리중기자금은 연 이자율이 8%로 현재의 평균 사채이자율 24.2%보다는 무려 16.2%나 싼 자금일 뿐만 아니라 상환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2년간은 이자만을,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에 원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매우 좋은 조건의 자금이다. 다만 이 자금은 살림이 어려운 농어촌의 저소득계층인 영세소농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실히 노력해왔으나 워낙 취약한 경제기반 때문에 고리의 사채를 쓰게된 계층에 대해 배려한 것이며 특히 영세농어가들에 대해서는 상환유예와 부담경감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들 영세소농어가들이 사채를 지게된 것을 담보능력이 없어 농협 등 제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 보증하게 함으로써 모든 농어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1ha가 넘는 경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농여가의 사채와 100 만원을 초과하는 영세소농여가의 사채는 1인당 대출한도의 확대, 신용보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연리 14.5%의 특별상호금융자금으로 대체해 주기로 하였다. 단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호당 200 만원 이내이다.

이 조치의 대상자는 「새마을영농회」에서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위원회」가 확인하여 선정한다. 여기서 선정되면 단위농협 또는 지구별 수협에 이를 통보, 마을별로 배정된 자금범위내에서 농어가별로 지원액을 배정받게 된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시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재해를 입었거나 영농·영여에 실패한 경우, 연이은 가족의 질병 또는 홍사 등으로 사채를 지게된 경우, 취약구조개선사업 등 마을공동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사채를 지게된 농여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같은 사채대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500 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하여 농여가는 연 1,295 억원의 부채경감효과

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3) 영세농어가의 중장기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이 조치는 지금까지 정부의 중장기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이용한 영세농어가의 금리부담완화와 상환연기를 통하여 이들의 일시적인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어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고 의욕적인 생산활동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0.5 ha 미만의 영세농 또는

〈주요내용〉

1. 대상자금규모 : 3,740 억원('86 년말 잔액기준)
2. 대상자 : 소유경지 0.5 ha 이하의 영세농,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가
3. 대상자금 : 각종 농수산 중장기자금
4. 지원조건
 - 금리인하 : 현행 5 ~ 11 %에서 3 %로
 - 상환기간 : 3 년 거치 7 년 상환
(단, 잔존상환기간 10 년 이상일 경우는 금리만 3 %로 인하)
5. 경감효과 : 연 262 억원

이에 준하는 어가로서, 이들이 아직 갚지 못한 각종 중장기 정책자금 3,740억원을 싼 이자의 장기자금으로 대체해주는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하여 이들 농어가는 연 262억원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농수산물관련자금 금리인하.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종합대책 발표시에 영농·영어자금과 농어촌주택자금, 소 입식자금 등에 대해서 금리를 10%에서 8%로 인하시킨 바 있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에서는 그외의 중장기 농수산물관련자금의 금리를 현행 10~11%에서 8%로 인하시킴으로써 모든 자금이 8% 이하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조치로 영세농어가 아닌 일반농어도 기존·중장기자금에 대해서만도 연 235억원의 경감효과를 보게 되었다.

—〈주요내용〉—

1. 농수산물자금 금리:

$$\frac{\text{현행}}{10 \sim 11\% / \text{연}} \implies \frac{\text{조치후}}{8\%}$$

2. 대상자금규모: 11,213억원('86년말 잔액)

3. 대상자금: 각종 농수산물 중장기 자금

4. 경감효과: 연 235억원

또한 앞으로도 보다 싼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수산업의 투자수익율이 더욱 높아져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5) 1983~'84년의 소입식자금 이자 대지급

정부는 소값파동에 따른 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83~'84년도 소입식자금의 금리를 현행 8%에서 3%로 인하하고, 이 금리의 부담은 축산진흥기금에서 대지급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는 이자를 전액 탕감받는 효과를 보게되어 앞으로 원금만 분할상환하면 되겠다. 이로 인하여 이들 농가의 총 부담경감효과는 903억원에 달한다.

〈주요내용〉

1. 조치사항: '83~'84년도의 소입식자금 이자를 축진기금에서 대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이자 부담 면제
2. 대상자금규모: 2,502억원('86년말 기준)
3. 경감효과: 903억원(기존 이자율 8% 기준)

(6) 연체금리의 인하

정부는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하여 제때에 제도금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적용하던 연체금리도 현행 보다 2% 낮춤

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1986 년말 현재 총 연체규모는 2,967 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조치로 인하여 당장의 이자감면액만 하여도 59억원 정도가 된다.

〈주요 내용〉

1. 영농자금 등 정책자금 :	$\frac{\text{현행}}{17\%}$	$\Rightarrow$	$\frac{\text{조치후}}{15\%}$
2. 상호금융 :	20		18

(7) 농지구입자금 지원

그동안 농지가격이 비싸서 영농규모를 확대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한 우리 농가들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하여 도시로 떠나는 이농민들도 땅을 팔지 못하고 소작을 주는 예가 허다하여 많은 농민들이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호당 경영규모의 확대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이 조치는 이러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농촌에 남아 열심히 농사짓기 위하여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민에게 장기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영농규모확대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금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농민은 현행 임차료 수준 또

—〈주 요 내 용〉—

1. 지원 총 규모 : 2,000 억원
2. 지원조건 : 연리 5%, 상환기간 20 년
(2 년 거치 18 년 상환)
3. 부담경감효과 : '87 ~ '89 년간 총 1,140 억원

는 그 이하의 부담만으로 20 년을 갚아나가면 차기농지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자금으로 연리 5%, 2 년 거치 18 년 상환조건이다.

지원자금의 총 규모는 2,000 억원인데 이로 인하여 농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1987 ~ '89 년까지의 3 년만을 계산해도 대략 1,14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8) 교육비 경감을 위한 기숙사시설 확충

농어가부채증가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는 대학의 기숙사 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어의 교육비중에는 도시에 유학시킨 자녀의 숙식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 만 4 천명에 그치고 있는 기숙사의 수용인원을 1991 년까지 11 만명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제외한 총 학생의 13 %에 지나지 않는 현재의 기숙사 수용률은 40 %로 높아질 것이다.

—〈주 요 내 용〉—

1. 기숙사 수용인원: $\frac{'86}{34 \text{ 천명}} \Rightarrow \frac{'91}{110 \text{ 천명}} \sim \frac{'91/'86}{3.2 \text{ 배}}$
2. 수 용 률 : 13 % 40 %
3. 기숙사 건축을 위한 지원
 -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 연 400 억원
 - 지원조건 : 연리 5 %, 5 년 거치 5 년 상환
 - 종합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방안 강구

이처럼 대폭적으로 확충된 대학 기숙사에는 농어촌 출신의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사시켜 현재의 하숙비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연 400 억원씩 지원하고, 이 외에도 종합적인 세제 또는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대학당국이 이를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나. 소득증대 및 부채억제대책

(1) 소득증대 및 부채억제대책의 의의

앞에서 설명한 농어가부채의 경감대책은 당장의 부채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어려운 농어가경제를 안정시키고 농어업의 생산의욕을 북돋우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채대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어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농어촌종합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영세소농 또는 어가에 치우친 우리의 농어업구조의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농외소득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이와 연계시켜 농어업을 보다 능률적인 생산부문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소득증대의 상승적인 효과를 유발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농어가 소득증대 대책은 이러한 기본방침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즉 농어업부문은 해외수출, 등 국내의 유효수요의 확대, 국내공급부족인 콩, 옥수수 등 농산물의 증산을 통한 수입대체, 가공 및 포장 등의 개선으로 품질의 고급화, 농수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농업소득을 보완시켜 농가의 소득기반을 전실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공지구 등의 확대조성과 이에 관련된 제반 지원 및 제도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기업도 충분히 수지를 맞추면서 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의 부업단지와 관광농업단지를 확대조성함으로써 보다 농어가에 밀착된 소득원을 다양

하게 육성시킬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모든 정책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면 농어촌경제의 발전은 보다 가속될 것이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부채의 부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농어촌경제의 주체가 바로 농어민 여러분이며 정부나 기타 여러 경제·사회단체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부채문제의 해결이나 농어촌의 발전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게 좌우된다 하겠다. 무절제한 소비나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한 무리한 자금운용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의 짐으로써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책은 앞으로 제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시에는 보다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용자사업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농어가의 경영지도를 통하여 자금의 사용을 생산적으로 함으로써 부채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보완대책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농어가의 소득증대대책

(가) 농어업소득의 안정적 증대

농어업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는 첫째, 수출유망품목의 집중지원과 시장개척에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피류, 과채류, 화훼류, 수산물 등 증산지원을 강화하며,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촉진단 파견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이다. 사실 지난해에는 농림수산물의 해외수출이 전년에 비해 33%나 증가한 18억 6천만불에 달해 이 부분의 시장확대가 우리 농어업성장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

둘째, 국내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 중에서 수입대체가 가능한 콩, 옥수수, 참깨, 땅콩 등은 수매가격 예시와 수매확대를 통해 증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생산과잉상태에 있는 작목들을 이 부문에 전환시킴으로써 가격불안정 요인을 제거시켜 나가는 간접적인 효과도 크리라 예상된다.

세째, 가공·저장 및 포장개선으로 농수산물의 품질을 고급화시켜 다양한 수요층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부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식품의 가공, 저장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식품 연구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농어업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는 이들 생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주산단지를 통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조절체제를 확립하고, 농업관측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계획생산을 유도하도록 제반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나) 농어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의 증대

우리와 같은 영세소농구조하에서는 농어업소득의 증대만으로 늘어나는 농가의 소비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근원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나라들도 높은 농외소득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의 공업화가 도시 또는 일부 공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농외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크지 못했다. 정부는 이 점을 중시하여 앞으로는 농공지구 등의 확대조성을 통해 농어촌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어촌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농지전용절차의 간소화 및 도로개설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의 경제상공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공장건설을 억제함으로써 농어촌의 기업진출을 촉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농외취업을 가능하도록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공업화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다.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공지구는 1991 년까

지 전국적으로 180 개소를 지정함으로써 일부 여건이 나쁜 벽지를 제외한 전 농어촌지역(약 90%)의 시군에 1 개소 이상의 농공지구가 들어서도록 할 것이다. 현재(1987년 2월말)는 37개 농공지구에 300개의 공장이 입주완료 또는 계획을 하고 있는 바, 금년말이 되면 61개 지구(55개 시군)에 고용인원은 11만 4천명에 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농촌공업화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농공지구에 고용된 인원만도 1991년에 가면 40만명에 달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효과는 1조 1천억원에 이르리라 전망된다.

이를 쌀로 환산하면 1,400만석의 증산효과와 같으며, 쌀 구매가격을 매년 20%씩 인상하는 결과와 같은 셈이다.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소득의 비중은 현재('85년)의 36%에서 '91년엔 47%로, 2000년경엔 7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며 농가소득은 도시가계소득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전망〉

	1987 년말	1991 년말
○ 농공지구수	61 개소	180
— 해당 시군	55 시군	135
○ 고용인원	114 천명	402
○ 소득효과	1,552 억원	11,053

한편 정부는 농공지구외에도 농어촌 부업단지와 관광농업단지를 확대조정함으로써 보다 농어가에 밀착된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농어촌부업단지는 1986 년말까지 609 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금년중에 100 개 단지를 신규조성하고,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훈련 및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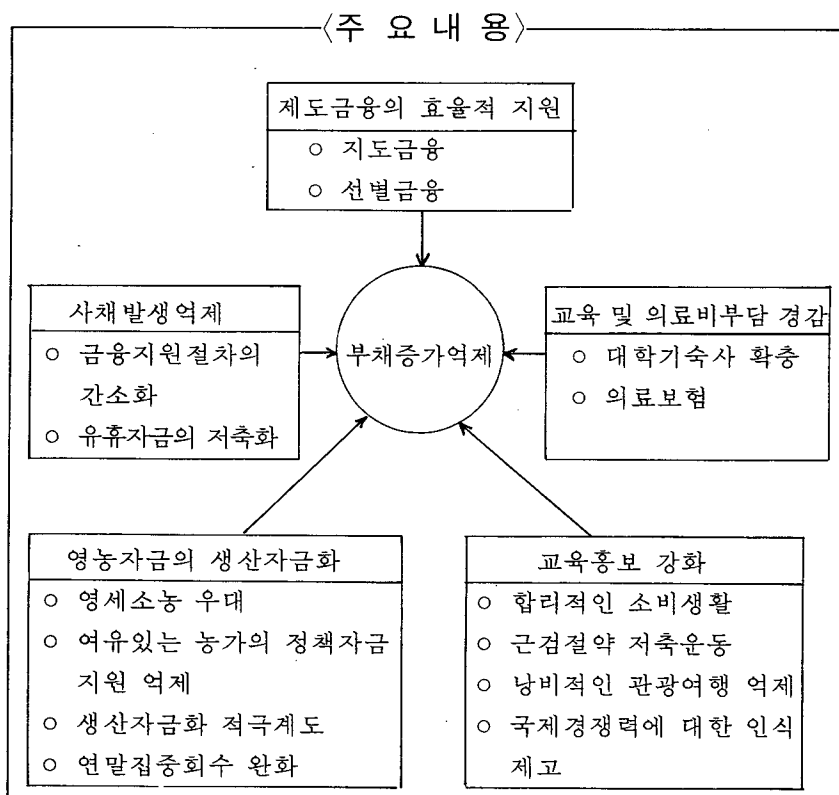
관광농업단지는 금년에 18 개소의 시범지구를 신규로 조성함으로써 총 64 개소가 되게 하였으며, 경영형태도 단순한 직매장 위주에서 휴식과 임대경작 등 종합관광농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농어촌 부업단지 및 관광농업단지의 확대조성〉

- 농어촌 부업단지 ('86 년말) 609 → ('87 년 신규조성) 100 개
 -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훈련 강화
 - 우수단지, 선진기업 등 시찰과 전학
 -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강화
 - 상표개발, 전시회, 수출개발 및 전문매점 증설
- 관광농업단지 ('86 년말) 46 → ('87 년 신규조성) 18
 - 단순직매 → 종합관광농원

(3) 농어가 부채증가 억제대책

그동안의 농어가부채 증가요인 가운데는 어려운 농어촌경제의 여건에 기인한 것도 많지만, 농어가의 무리한 자금관리나 소비지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부채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한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농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하겠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채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채증가 억제대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첫째, 지도금융체제의 확립과 선별금융을 통하여 농어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나 자금관리로 인한 부채증가를 억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함으로써 투자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용자효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억제하는 등 용자기관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나아가 용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영농·영어자금 등 농수산자금의 생산목적외 사용을 억제하고, 농어가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률적인 정책지원을 지양하는 선별금융을 강화할 것이다. 예로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성적이나 학교활동상황 등을 감안한 학교장 추천요건을 추가하고, 생산자금의 경우에는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생산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농수축협이 금융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채발생의 요인을 제거시키고 농어촌 유희 사채자금을 제도금융기관의 저축을 통해 흡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농어가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 관혼상제비 등과 같은 긴급자금 용자를 원활하게 하도록 할 것이다.

세째,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대학 기숙사시설을 확충하고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교육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할 것이다.

네째, 영농어자금의 생산자금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부채상환불능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영세소농을 우대지원하는 경영규모별 차등지원제를 지켜나갈 것이며, 사채를 주고 있는 농가 등 자금여유가 있는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억제할 것이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편중용자 등의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원된 영농자금이 생산에 쓰이도록 적극 계도할 것이며, 연말에 갚아야 하는 영농어자금의 30% 정도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연기토록 함으로써 연말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상환하는데서 오는 폐해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각종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모두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를 굳게 할 것이다. 각종 농어민 교육시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마을부녀회를 통한 근검절약적인 저축운동을 전개토록 하며, 낭비적인 관광여행과 같은 것은 억제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그대신에 선진 생산단지 등의 방문과 같은 실익을 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는 대외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러한 점에 대해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다.

4. 경감대책의 시행지침

가. 사채대체자금의 지원

(1) 사채의 범위

'87. 3. 16. 0 시 현재의 사채

(2) 지원조건

(가) 저리자금 (연리 8%))

- 호당한도 : 마을 배정액 범위내에서 새마을영농회(이하 “영농회”라 한다)가 정한 금액으로 하되 1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환기간 : 2 년거치 3 년상환

(나) 특별상호금융자금 (연리 14.5%)

- 호당한도 : 마을 배정액 범위내에서 영농회가 정한

금액으로 하되 2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저리자금을 지원받은 농어가에 대
 하여는 저리자금을 포함하여 2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채권보전

- 신용이 양호한 자는 신용대출 한도 이내에서 신용대
출함.
- 신용대출한도 초과 또는 부적격자
 - － 담보대출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무입보)함.

(라) 연체보유자에 대한 대출

- 연체채무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신규대출
실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정리한 후 대출함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가) 공통기준

- '87. 3. 16. 0 시 현재 농어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농어가
- 알뜰한 가게운영과 성실한 영농어에도 불구하고 재

해나 특용작물재배 등으로 경영수지의 악화 또는 질병 등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사채를 지고 있는 농어가

- 다만, 아래 농어가는 제외
 - 분에 넘친 소비생활, 사행행위 또는 투기 등으로 사채를 지게 된 농어가
 - 자력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농어가

(나) 저리자금 (연리 8%) 지원대상

- 1.0 ha 이하에 준하는 농어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이내에 재해를 입거나 영농어에 실패한 농어가
 - 가족질병이나 홍사, 교육비 등으로 부득이 사채를 지게 된 농어가
 - '83 ~ '84 소 입식 농어가
 - 주택개량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채를 진 농어가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어려운 농어가

〈1.0 ha이하에 준하는 농어가〉

- 1.0 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는 농가

다만, 농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지불 및 융자금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농지는 소유농지 범위에서 제외함.

- 비어선어업어가, 무동력선 또는 5 톤이하 동력선을 사용하거나 소규모 증·양식(수하·연승식 3 ha 또는 살포·투석식 12 ha 미만) 어가
- 소 15 두, 돼지 75 두, 또는 젓소 10 두 이하의 양축 농가
- 기타 위에 준하는 어려운 농어가
- 다만, 아래 농어가는 제외
 - 가구원중 월평균소득 20 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가 있는 농어가
 - 위 소득수준을 상회하는 시설원예, 축산, 증양식 등 기타 겸업을 영위하는 농어가

(대 특별상호금융자금 (연리 14.5 %) 지원대상

- 전 “나” 항의 저리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채보유 농어가
- 저리자금을 지원받은 농어가로서 저리자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채를 가진 농어가

(4) 자 금 배 정

농수축협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영농자금 배정기준, 영세

소농어가 호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영농회까지)함.

(5)지 원 절 차

(가) 사채대체자금 지원신청

- 대상농어가는 소정 서식에 의거 영농회에 사채대체 자금 지원을 신청함. 〈서식 제 1 호〉
다만, 일반상호금융 취급절차에 따라 사채대체자금을 담보 또는 신용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 대체신청없이 융자받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87. 3. 28 ~ '87. 4. 3 까지
(영농회심사 : '87. 4. 8 까지)

(나) 지원대상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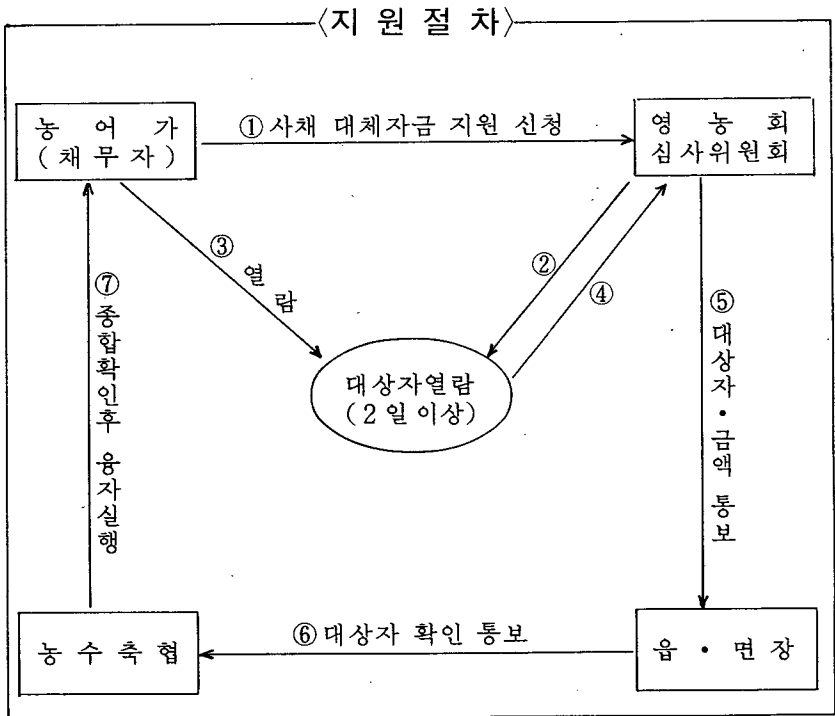
- 영농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한도내에서 자금별 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심사결정, 읍·면장에게 통보함. 〈서식 제 2, 3 호〉
- ※ 영농회는 심사결정된 사항을 2 日以上 대상농어가
로 하여금 열람토록 함. 〈서식 제 2 호〉
- 읍·면장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농수축협조합에 통보함. 〈서식 제 2, 4 호〉
- 농수축산업 겸업농어가일 경우는 주소특업종조합

(농수축협)에 통보함.

※ 심사위원회 설치요령 : 첨부 1

(다) 용자실행

- 농·수·축협조합은 읍·면장의 통보를 받아 이를 신용상태 등을 종합 확인한 후 용자함.



- 용자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되 그 대전은 채권자의

예금통장에 예치 교부하도록 장려함.

- 사채대체자금을 담보 또는 신용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호금융 취급절차에 따라 '87. 4. 2 부터 融資받을 수 있음.

(6)기 타

- 사채대체신청 농어가는 사채내용을 정확히 신청하여야 하며, 영농회 심사위원회는 이를 성실히 심사하여야 함.
- 사채대체를 신청하는 농어가는 별첨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 5 호〉
- 허위 또는 불성실 신청사실이 발견될 때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법적 조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함.
- 사채대체지원 대상자가 농수축협 조합에서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융자 수속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영세농어가 중장기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지원

(1)대상자 선정기준

- 중장기 자금을 대출받은 0.5 ha 이하에 준하는 영세 농어가

〈0.5ha이하에 준하는 농어가의 범위〉

- 0.5 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는 농가
- 비어선어업어가, 무동력선 또는 2 톤 이하 동력선을 사용하여 소규모 증·양식(수하·연승식 1.5 ha 또는 살포·투석식 6 ha 미만) 어가
- 소 8 두, 돼지 38 두, 또는 젖소 5 두 이하의 양축농가
- 기타 위에 준하는 어려운 농어가
- 다만, 아래 농어가는 제외
 - － 가구원중 월평균 소득 12 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가 있는 농어가
 - － 위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시설원예, 축산, 증양식 등 기타 겸업을 영위하는 농어가

(2) 대체지원 대상자금

(가) 대상자금

- 농기계자금,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 영세농자립지원자금, 농수산개발자금, 축산진흥기금, 재정중기자금, 어
- 선건조자금, 농촌주택자금 등('83 ~ '84 소 입식자금은 제외)

※ 세부내역은 별도 시달

(내 기 준 일 : 1987. 3. 16 0 시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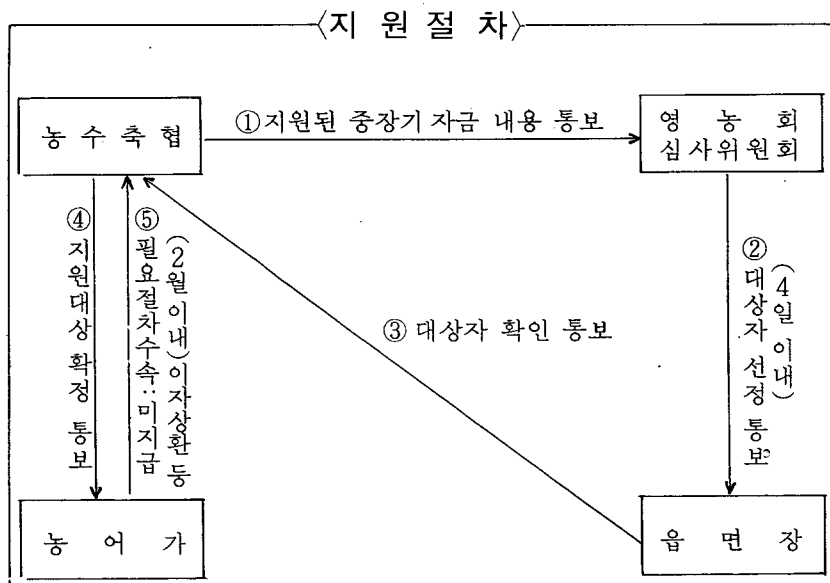
(최종상환기일 경과대출금 제외)

(3) 대체지원절차

가. 농수축협조합(군지부, 지점)은 농어가에 지원된 중장기자금 내역을 영농회에 통보함.

나. 영농회 심사위원회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대체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함.

※ 농수축협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선정 완료하여야 함.



- 다. 영농회로부터 통보받은 읍·면장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농수축협조합에 통보함.
- 라. 농수축협조합(군지부, 지점)은 대상자에 대해 기준일 전일까지의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징수한 후 대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마. 대체지원대상자가 농수축협조합에서 지원대상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체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농지구입자금지원

(1) 선 정 기 준

(가) 대 상 농 가

- 농촌 정착의지를 가진 근면성실한 정예농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함.
- 농어민후계자로서 기 지원액의 상환완료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농과계 고교이상 졸업자로서 영농증인 자
 - 농지소유규모가 1ha 미만인 자경농민으로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상기 기준에 준하는 자

(나) 대 상 농 지

- 읍·면 농촌지역의 전·답(과수원 제외) 우선

〈제 외 지 역〉

- － 도시계획 구역내이거나 관광지, 공업단지 등 농지 이외의 용도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농지
- － 농지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역
- － 국·공유 농지

(2) 대상자 선정방법

- 영농회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농협조합장에게 통보함.

※ 심의위원회 :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예정자로 구성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시 기능 대체)

(3) 지 원 한 도

- 농가호당 1,000 평 내외로 하되 융자지원은 80% 수준으로 함.

(4) 지역별 배정기준

농촌지역의 경지면적과 농가호수 등을 감안 배정

(5) 융자금 지원시기 : '87. 5 월이후

(6) 기타 세부실시요령은 별도 시달

〈부록 1〉

새마을영농회심사위원회설치요령

1. 목 적 : 사채대체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 중장기자금의 저리자금 대체 수혜대상자 선정,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자 추천 및 지원금액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함.
2. 설 치 : 새마을영농회에 설치
3.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5 ~ 7 인(영농회장, 부녀회장을 포함하여 개발위원장,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정화위원, 축산계원, 어촌계원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 위원선정시 농가, 어가, 양축가 또는 동성농어의 분포 등 마을특수성을 감안하여 안배하고, 사채가 없거나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영농회에서 선정
4. 위원장선정 : 위원중에서 호선
(지역사정에 따라 영농회장이 심사위원장을 겸할 수 있음)

〈부록 2〉

〈서식제 1 호〉

사채대체자금지원신청접수대장

○○영농회

채 무 자			사채액	용 자 신청액	영 농 어 규 모				연 간 소득 액	사 채 권 자	
주 소	성 명	인			소유 구분	종 별	규 모	추정재 산가액		주 소	성 명
			천원	천원			평(척)	천원	천원		

〈서식 제 2 호〉 사채대체자금지원대상자선정결과통보서

○○영농회

영 농 회 장 :

①인

심 사 위 원 장 :

①인

농어 가별	채 무 자		사채 액	융자 신청 액	융 자 사 정 액			영 농 어 규 모				년 간 소득 액	사채권자		채 무 자 열 람 인 확
	주소	성명			저리	상호 금융	계	소유 구분	종별	규모	추정 재산 가액		주소	성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평(척)	천원	천원			

확 인

○○읍 · 면 장 · ①인

○○읍 · 면 장

귀하

○○농수축협조합장

※ 농어가별은 주소등록종을 기준으로 농가·어가·양축농가로 구분표시

〈서식 제 3 호〉

사채대체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금번 본회에서 사채대체자금 신청 농어가의 신고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별첨 지원대상자는 정부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에 맞게 선정하였으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통보합니다.

첨 부 : 사채대체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1 부. 끝

1987. . .

○○영농회장	(인)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읍면장 귀하

〈서식 제 4 호〉

○ ○ 읍 면

문서번호

1987.

수 신 농수축협 조합장

제 목 사채대체자금 지원대상자 선정확인결과 통보

금번 당 읍면에서 새마을영농회로 부터 심사 제출
된 별첨 지원대상자 및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에
맞게 선정되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첨 부 : 사채대체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1부. 끝

○○ 읍 면 장

⑨

〈서식제 5 호〉

각 서

본인이 금번 사채대체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 사채내용을 성실히 신고하였고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만일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 상환은 물론 융자 중단 조치와 형사고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98

각 서 인

○ ○ 영 농 회

주소 :

성명 :

①인

○○읍 면 장 귀하
○○조 합 장

빈 면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의 배경과 내용

1987년 3 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 - 102

등록 1979년 5월 25일 제 5 - 10호

전화 962 - 7312 ~ 5

인쇄처 (주) 문 원 사

〈비 매 품〉